

의 정 정 보

2007 - 3

3. 9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8
 . 최근 중앙기관의 지방관련 동향	25
 . 부록〈행복한 책읽기〉	36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 관련

《질 의》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행위금지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할 경우

※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제정예정)

- 상담대상 : 시민 및 공무원
 - 상 담 관 : 고문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상담범위 :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 상담방법 : 대면상담 및 사이버상담
 - 실비보상 :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지급
 - 상 담 실 :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1. 위와 같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담관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중에는 운영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는지(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경우 상시운영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바, 귀문의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제공 및 상담관에 대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의 지급행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의한 제한기간개시일 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그 제한기간중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국회의원의 공청회 초청장 발송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교흥(열린우리당, 인천서구강화갑, 교육위원회)은 지역구 내에서 “교복가격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초청장 발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복가격 어떻게 뺄 것인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 및 학부모들의 참석을 유도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명의의 초청장 발송 가능여부
단, 초청장 발송 대상은 유관기관(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전교조 등)·이해관계단체(교복관련업체 등) 및 지역구내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며 발송방법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법임.

《답 변》

국회의원이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청회 주제와 관련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학부모회 대표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역구내의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입후보 예정자 도서출판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도서출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책자의 출판을 준비하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를 문의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판목적

○ 저 자

- 대선후보인 A씨에 대한 살아온 삶과 경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피력
- 출판을 통해 책이 판매되었을 때 이익창출

○ 출판사 : 책의 판매에 따른 이익창출

2. 출판내용

- 대선후보 A씨의 개인적으로 자라온 과정에 대한 소개와 저자의 해석
- 대선후보인 A씨의 기업활동에 대한 소개와 저자의 해석
- 대선후보인 A씨의 공직활동에 대한 소개와 저자의 해석
- 대선후보인 A씨에게 향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저자의 요구

3. 가제목 및 주요목차

○○○(A의 성명),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어라

제1부, 자신의 인생을 바꾼 ○○○

제2부, △△△△을 일으킨 ○○○

제3부, □□□을 바꾼 ○○○

제4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어라

4. 가격책정 및 판매방법 : 출판사의 기존관례에 따라 책값설정과 서점을 통한 판매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7.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의정보고서에 후원회장 인사말등 게재 관련

《질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보고서 자료를 위해 다음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의정보고서에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인사말, 정책적 내용에 대한 언급 게재
2. 정책을 설명하는 제3자의 문구 내용 게재의 적법성 여부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귀문과 같이 후원회장의 인사말이나 국회의원의 정책에 대한 후원회장 또는 제3자 등 의정보고의 주체가 아닌 자의 설명 등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제3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설날인사 및 캠페인용 명함제작·활용 관련

《질 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당원 및 지역인사, 지역봉사단체(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과 함께 설날 주간에 지역구내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장을 보러 온 시민을 대상으로 설날 인사 및 재래시장 애용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이상의 명함을 설날 주간에 재래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온 시민들에게 나누어 줘도 되는지 여부.

《답 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은 명함을 제작하여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인사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재래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오는 선거구민에게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의례적인 명함교부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국회의원의 봉사단체 캠페인 참여 관련

《질 의》

중앙선관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거법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과 봉사단체(라이온스 클럽 등) 등이 주관하는 재래시장 애용 캠페인에서

1. 국회의원이 대학명과 봉사단체명이 기재된 장바구니를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또한, 장바구니를 나누어 줄 때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 인원과 항상 동반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캠페인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그 물품을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귀문 2와 같이 동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와 별도로 국회의원과 그 수행자 등 만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임.
(2007. 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관련

《질 의》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1.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대량발송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한명씩 한명씩 전화번호를 선택(전화번호 1개씩 마우스 클릭 및 자판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로 아래의 내용을 의정활동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 방송사 토론회 출연 문자(○○○의원, ○○○방송 ○○○토론회 출연, 저녁○시, 시청바랍니다!)

나. 언론매체 보도 문자(○○○의원, ○○○신문 ○○페이지 ○○○ ○○○ 기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안 통과 문자(○○○의원,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경우 의정활동보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수신동의와 관계없이 의정활동보고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

《답 변》

1. 문 1의 가·나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귀문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1의 다·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7. 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19919호, 2007.2.28공포]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8호, 2007. 1. 3. 공포, 2007. 3. 4. 시행)되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문취업(H-2)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특례의 대상 및 사용자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특례의 대상자(안 제19조)

- (1) 현행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동포를 고용특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어 처음부터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도입을 전제로 한 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용특례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고용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 (3)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 마련(안 제20조제1항)

- (1)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개개인별로

고용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와 그 취지가 같으므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업종·사업장에 해당할 것, 일정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할 것 등)을 준용하도록 함.
-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에 대하여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1호의2 신설)

법에서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동포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904호, 2007.2.28공포]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18호, 2007. 1. 3. 공포, 2007. 3. 4.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체류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취업 해당자의 범위 및 체류활동에 관한 심의절차(안 제23 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1) 종전까지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 및 체류와 취업활동 등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 (2) 외국국적 동포 중 무연고 동포의 연간 입국허용 범위 및 사업장별 동포 고용인원의 상한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국적별 입국허용 인원 등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함.
- (3) 동포정책에 관하여 소관업무 관련 위원회의 정책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신설(안 별표 1 제31호 신설)

- (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단순 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의 경우 국내 입국 및 취업활동시 다른 지역 동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문제점이 있었음.
-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 하며, 무연고 동포의 경우에도 매년 연간 허용인원을 정하여 입국 및 취업활동을 허용하도록 함.
- (3) 외국 국적 동포들을 차별없이 적극 포용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③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901호, 2007.2.28공포]

1. 개정이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주업법인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에 포함시키고, 채소재배용 차광망 등 농업용 기자재 3종과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등 어업용 기자재 2종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여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항제4호 신설)

- (1) 농업회사법인이나 축산업주업법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어업주업법인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2) 농업회사법인 또는 축산업주업법인과 같이 어업주업법인이 구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이들의 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안 별표 5 제7호, 안 별표 5 제17호 및 제18호 신설)

- (1) 다른 농업용 기자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소재배용 차광망,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및 화훼용 종자류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 (2) 가축사료의 가격인하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채소재배용 차광망 및 화훼용 종자료의 구입부담을 줄여 시설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안 별표 6 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1) 적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양식장용공기공급장치 및 선박 내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조타장치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 (2)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자동조타장치에 대한 구입부담을 줄여 적조피해의 예방 및 어업인력난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893호, 2007.2.28공포]

1.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안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안 제12조의3제1항)

-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안 제12조의4제2항)

-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안 제27조제2항 신설)

-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안 제53조)

-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

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 (안 제63조의5 신설)

-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안 제65조의4)

- (1)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건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함.
- (3) 시민에 의한 탈세감시제도가 활성화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제2항·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889호, 2007.2.28공포]

1.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규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위험이 적은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의5제4호 및 제5호 신설)

- (1)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2)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추가함.
- (3)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 기능이 강화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원자금 회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할인 근거 마련(안 별표 1 비고 제3호 신설)

- (1)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상계·압류가 금지(증권거래법 제44조의3)되는 등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위험이 적어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보험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2)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에 보험요율 1만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연간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나,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요율의 3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3) 증권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증권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요율 인하(안 별표 1의2 제6호)

- (1) 신용협동조합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다른 부보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어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에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에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3)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제228호, 2007.2.14공포]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관리기관(안 제3조제1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폐기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위탁관리가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의 유기성오니(有機性汚泥) 매립의 허용(안 별표 4 제4호라목(2)(나)①㉠ 신설)

- (1) 현행은 유기성오니의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 기준이 강화되므로 유기성오니의 육상매립처리방안 등 그 처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할 수 없도록 함.
- (3) 유기성오니의 원활한 처리와 발생하는 가스에 대한 자원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폐기물 장기보관에 대한 특례(안 별표 4 제6호나목(7) 및 (8) 신설)

- (1) 현재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내기술이 없어 장기 보관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음.
-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를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장기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 등(안 별표 4 제6호다목(2)(나)에 ⑤ 내지 ⑦ 신설)

- (1)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가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관리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2)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저위(低位)발열량 · 황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등 재생연료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시설의 기준을 마련함.
- (3) 재생연료유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폐오일필터의 처리방법(안 별표 4 제6호다목(2)(너) 신설)

- (1) 폐오일필터의 경우 압축이나 파쇄 등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폐오일필터의 경우 소각처리 뿐 아니라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로 분리하여 폐유·고철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여과지·고무 등은 소각·매립하는 파쇄처리 재활용방법 또는 폐유·고철을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증류처리 재활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폐오일필터의 적절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19883호, 2007.2.12공포]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38호, 2007. 1. 11. 공포, 2007. 2. 12. 시행)되어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제외함)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안 제9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 정함.

다.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13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안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 (1)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등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등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의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3) 혁신도시 개발의 취지에 맞게 조성토지 등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안 제19조 및 제22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 등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함.

- (3) 토시상환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등(안 제36조 내지 제38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구체적인 매입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정하고,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매입의 절차,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안 제44조)

-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사비용 및 한시적인 이주수당의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⑧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9878호, 2007.2.8공포]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004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

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액, 담보의 종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절차(안 제2조 신설)

-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별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함.
- (3)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안 제4조 신설)

-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 의결 및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담보(안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 신설)

-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2)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보액을 제조자 등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하는 한편, 담배제조업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 (3) 담보액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385호, 2007.2.7공포]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며, 시설종류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신청 및 장애등급조정시 장애정도심사의 의뢰(안 제3조 제4항 및 안 제5조제4항)

- (1) 장애인등록신청 등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의 진단서가 장애등급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장애등급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3)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제3호)

- (1) 장애인이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 (2)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3)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설종류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34조제3항)

- (1)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신규시설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3)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운영요원 자격조건 완화(안 별표 4관련)

- (1) 시설 운영요원중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조건을 간호사만으로 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2)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함.
- (3) 원활한 인력확보가 가능하여 시설운영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중앙기관의 지방관련 동향

① 2007년 도서종합개발계획 확정 시달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낙후된 도서(섬) 지역의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2007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안)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2(금) 확정·시달했다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8년부터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98~'07)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제2차 10개년 도서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간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소득증대와 주민생활문화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07년도는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마무리 해로 기존 추진중인 계속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생활기반, 생산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시설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이번, 07년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산자·환경·해수부, 산림청 등 5개부처와 합동으로 147개도서에 382건, 2,81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서 부처별 세부 사업계획은
 - 행자부 : 생활·생산·문화복지시설 등 270건, 1,430억원
 - 농림부 : 농업용수개발 등 3건 35억원

- 산자부 : 전기공급사업 2건 52억원
- 환경부 : 식수원개발, 소각시설 등 55건 869억원
- 해수부 : 국가어항 건설 12건, 392억원
- 산림청 : 조림, 육림, 임도사업 등 40건, 41억원 등이다

- 한편, 지역주민의 명예감독관 위촉 및 공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사업간 연계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낙후지역개발추진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07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으로 주민생활문화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08~'17년) 수립지침에 반영하고, 좀 더 내실있고 사업효과성이 높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② 토지대장 신원 확인없이 발급 추진

- 행정자치부는 2.23(금)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양식 제1차관, 김신복 서울대부총장)를 개최하여 토지대장을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와 같이 개인정보 확인없이 즉시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할 경우, 구청에서와 달리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신원확인 없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외부인사 5명과 행자부 간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인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날도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도록 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하고, 1건의 과제(산림법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 후 차기 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짓기로 하였다.
- 이 날 회의에 상정된 과제 5건은 실무적으로는 이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제인데, 협의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조치 관련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6. 12. 26.부터 '07. 1. 31.까지 37일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 33,952명의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 경감액은 1,128,477,550원, 주민등록증 발급 및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액은 각각 28,625,000원, 8,189,600원이다.

-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에는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주소로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 동안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었다.

□ 특히, 재등록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의 선행도 잇따랐는데

- 울산 중구에서 사는 A씨는 특정한 거주지가 없어 주민등록을 둘 곳을 찾기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일자리도 없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주소로 주민등록을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도 **안내**하고 다른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공무원의 말은 주변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다.
- 충남 천안시와 연기군에서는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주민이 있자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이장**이 그 주민을 직접 데리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등록증은 있는지 물어보면서 새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취약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을 수소문해 재등록토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재등록 기간 운영을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취약계층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가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구내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본 사실을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취학을 독려·안내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행정기관이 부주의하게 말소 조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지자체**에 대한 **지도·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고
 - **일제정리기간에만 말소하는 방안** 등 직권말소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③ 균형발전 지역개발분야 총괄 지원·조정 강화

-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개발과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이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조정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현재 추진중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 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농어촌 개발사업의 통합 차원에서
 - 오지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 행정자치부 소관 일부 집행적 성격의 농어촌 개발사업을 농림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하는 한편,
 - 행정자치부가 지닌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개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역의 종합적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규로 부여 되는 기능이다.
-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역할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하 '균특법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에 반영되어 2.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법적 뒷받침을 갖게 되었다.

□ 이번 균특법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 균특회계 개발계정 시·도 예산안 검토를 통해 시·도에서 추진되는 사업 간 유사·중복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시하고,

※ 균특회계 운영현황

▪ '06년 기준 총 5.9조 규모 : 지역개발계정(4.5조), 지역혁신계정(1.4조)

계정별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유형별	소계	자율편성	균형발전기반 지원	국가직접	혁신역량강화
'06년 예산 59,067(억)	45,127 (76.4%)	28,291 (47.8%)	10,363 (17.5%)	6,473 (10.9%)	13,940 (23.6%)
▪ 주요사업 예시	-	지역SOC, 관광지원 개발 등	도서, 오지, 접경 농 산어촌개발 등	재해예방 및 그린 벨트 관련사업	지역산업진흥, NURI 사업 등

- 지역별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대상으로 4월까지 평가하여, 5월중 국무회의 보고

- 이와 더불어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균형발전 주요시책 추진 관련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행자부차관·산자부차관 공동의장, 시·도 3급이상 관계공무원 참여

-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국 최소기준의 생활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간 생활여건의 격차해소를 위해,

- 올 상반기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지역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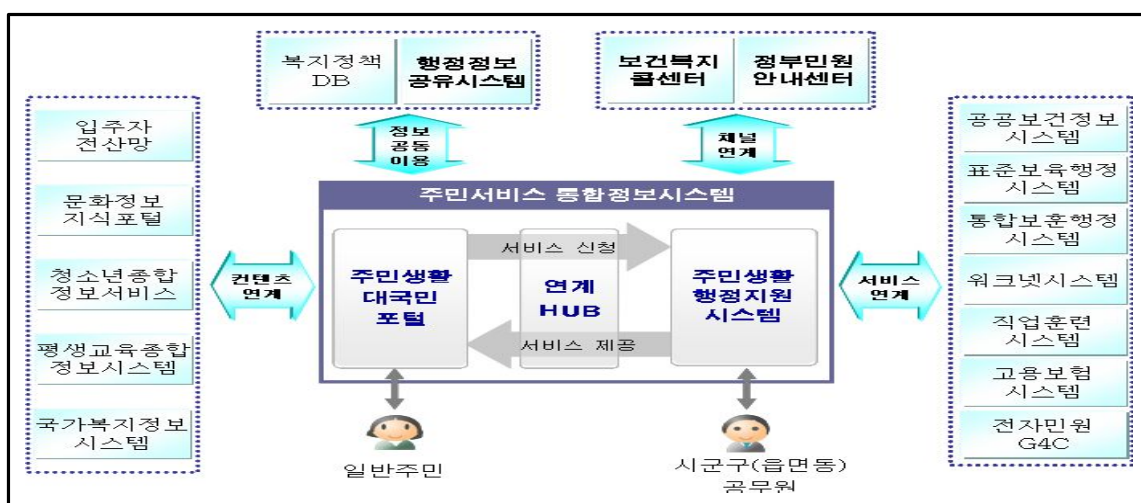
- 또한 이번 균특법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역이 지닌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 특색있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총괄하여 추진중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Happy Korea Project)**'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④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본격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23(금) 오후 2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 (유성구 소재)에서 박명재 장관을 비롯한 우수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등 320여명이 참석하여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06. 12월에 주민서비스혁신 1단계 시범지역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하여 대통령표창과 함께 시상금 1억원이 수여되며, 경상남도 함안군과 경기도 양주시가 우수를 차지하여 국무총리 표창과 시상금 각 5천만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15개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각 2천만원이 수여된다.
-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행정자치부(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자 위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선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 이는 해마다 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급증하는데 반하여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복지·고용·주거를 비롯한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간 연계강화로 시너지효과

및 행정능률 제고, ▶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중앙부처에서 제공되는 **유사중복 서비스의 조정**,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가능한 자원 확보 및 서비스의 과부족 조정 등이며

- 이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은 지난해 7. 1부터 1단계 **53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금년 **1. 1부터 129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중에 있고, **7. 1부터는 나머지 50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금년 7월부터는 국민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또는 시군구·읍면동 상담실을 한번만 방문하면 공공기관과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편리한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어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명재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참여 정부 혁신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복지시

시스템을 갖추어 국민 모두가 보다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 끊임없는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전달체계의 모델을 확립하여 고객만족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주민서비스혁신 1단계 추진 우수기관 선정 현황

평 가 결 과	우 수 기 관 (18개 시군구)	비 고
최우수(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우 수(2)	경기도 양주시, 경상남도 함안군	
장 려(15)	서울특별시(중랑구, 은평구), 부산광역시(사하구, 부산진구), 인천광역시(남구, 서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서구), 대전광역시(중구, 유성구), 울산광역시(남구), 경기도(수원시), 충청남도(논산시), 경상북도(안동시), 경상남도(하동군)	

□ 한편, 이날 시상식과 연계하여 대전시를 방문하는 박명재 장관은

- 그동안 시·도 방문에서 직접 설명하여 호평을 받은 『내고장살림 LAIS』(행자부에서 구축한 전국 자치단체 살림살이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를 구청장 및 시 관계관들에게도 설명함으로써 지방행정 운영 및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 대전시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 ‘07 역점시책인 2010년까지 일자리 12만개 창출, 대덕연구개발 특구 개발, 중부권 물류거점도시 건설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 주요 국정현안 및 지역안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유성구 온천2동 주민복지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한다.
- 박명재 장관은 지난해 12.13 부임한 이래 부산·광주·충북·경북·포항 등 자치단체 방문과 지난해 말 강원도 수해지역 및 군부대 위문, 설 연휴 민생현장 방문에서
 - 혁신특강 및 지방행정 운영방안 설명, 지방의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중앙-지방의 파트너십·스폰서십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 ‘행자부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모토 아래, “찾아가는·도와주는·지켜주는·앞장서는 행자부”상 정립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관심
- 저자명 : 척 마틴
- 출판사 : 대교배텔스만
- 출판년 : 2006년
- 페이지 : 143
- 가 격 : 9,800원

빌은 개인적인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며 일에만 매달리는 전형적인 워커홀릭 직장인이다. 그러다 새로 인수한 지사의 지사장으로 일하게 되고 중책을 맡게 되면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해 보지만 좀처럼 처리할 일은 줄어들지 않고 쳇바퀴만 맴도는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서 차츰 균형이 깨진 삶에 회의를 느끼고 지쳐간다.

그런 와중에 빌은 본사에서 파견된 '선생'을 만나게 되고 '루나 커피숍'에서 차 한잔을 하자는 선생의 제안을 받는다. 업무 중간에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운 빌은 마지못해 선생을 따라나선다. 루나 커피숍에 들러 선생과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선생은 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세 가지 비결을 제시한다. 그 비결은 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키게 된다.

선생은 빌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역설한다. 빌은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던 일을 멈추고(stop)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

게 되면서(look and listen) 여태 몰랐던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된다. 자신의 그런 작은 변화로도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해지고 끝이 보이지 않던 업무 상황을 극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변화는 조직 전체에 급속히 퍼져나가, 어느새 회사 분위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주위의 상황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일을 없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빌 자신 또한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빌 주위의 직원들이 이 비결을 듣고 실천함에 따라 더 적은 시간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세 가지 비결, Find It(발견하기), Change It(변화하기), Pass It On(전달하기)은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고 성공으로 이끄는 감동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